

## 유해 폐기물 취급 근로자의 선제적 건강관리방안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팀 책임전문위원  
전 승 태



작업장 및 근로자의 위생·청결은 산업보건 이전에 인간이 쾌적하게 생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유해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그간 유해폐기물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은 환경보전 측면으로 이루어졌고, 유해폐기물을 직접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 특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폐기물을 취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어느 정도의 사고위험이나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지 산업보건에 종사하는 분들조차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유해폐기물로부터의 유해물질 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오염원에 대한 작업자의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보건관리수단이나, 환경미화원과 같이 작업의 특성상 오염원으로부터 차단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노출된 오염원을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쥬야 한다.

과거에는 보건관리규정의 미비로 환경미화원에 노출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시설 설치 의무가 마련되지 못하여, 환경미화원에 대한 위생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선진외국도 근로자에 대한 위생확보 차원에서 신체나 피복을 오염시키는 작업 시 목욕시설 등의 세척시설 의무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2010년에 와서야 환경미화업무 등의 작업에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종사하게 하는 사업주에게 세척시설(세면·목욕시설, 갱의 또는 세탁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법령개정(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논의하였으며, 세척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노사의 인식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었다.

\*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3.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4.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부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또한 2011년에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이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원·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의 건강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었다.

환경미화원 종사자의 주요위험은 사고, 감염성질환,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인데, 그 중 가장 큰 위험은 사고에 의한 상해 및 사망의 위험이다. 쓰레기 수거자의 10만명당 사망률을 보면 산재발생 위험이 큰 건설근로자 보다도 높는데, 이는 환경미화원이 매우 위험한 작업에서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산업보건 측면에서도 환경미화원이 다양한 건강상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인들로부터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와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외에도 작업 종료 후 오염원으로부터 감염, 피부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세척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근로자 스스로도 오염된 작업복이나 환경미화용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오염원으로부터의 노출을 차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특히, 환경미화원은 가로청소, 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힘과 반복적인 자세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며,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예방접종과 교육도 요구된다. 환경미화작업 등 폐기물취급과 관련한 현행 안전보건기준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으나, 폐기물취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세척시설 설치 등의 조치들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정부차원의 점검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시멘트의 유해성은 분진 외에도 페타이어, 폐고무 등을 원료로 사용함에 따라, 쓰레기 시멘트, 발암시멘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을 정도로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조차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시멘트 분진과 직업성 암 발병과의 연관성을 고찰해 볼 수 있는 연구도 의미가 있겠으나, 시멘트 원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해성이 근로자나 일반국민의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유해폐기물 작업에 대한 미국 OSHA의 정화작업 사례는 유해폐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어떠한 절차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권고차원에서 제도를 소개해 주셨다.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전보건프로그램의 개발은 현재 공단의 KOSHA GUIDE에 「유해폐기물 취급 및 비상대응에 관한 기술지침」이 2013년도에 제정되었고, 내용도 미국의 기준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다.

권고기준이 법에서 정한 것 이상의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광범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에 별도의 안전보건프로그램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현행처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 지침을 적극 안내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관리방안이 환경보전 측면만 부각되고, 정작 폐기물을 직접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상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된 측면이 있다. 특히, 폐기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종류가 매우 많은 반면, 금번 세미나는 생활폐기물, 시멘트 취급 작업에 초점을 두고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어, 유해 폐기물 전반에 대한 보건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오늘의 세미나가 유해폐기물 취급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실태 조사가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